

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

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6일

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직무 내용
노동	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	1명	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(주 35시간)	지역경제과	- 노동정책 개발 및 추진,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- 노동조합 동향관리 및 노사갈등 해결 - 노동조합, 단체협약 심사수리 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(상담) 및 지도 - 노동현안 관리 등

※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,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※ 주 35시간 근무(1일 7시간, 09:00~17:00) - 상황에 따라 10:00~18:00 로 근무시간 변동 가능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3. 응시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지역,연령,성별 : 만 18세 이상인 자로 지역, 성별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응시자격요건
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	-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-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-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사관계,노동분야 연구·기획·수행 등 업무경력 ·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업체, 노동단체, 정당, 민간단체 또는 노무법인에서 임용예정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

※ 직무경력 : 위 분야 관련 공공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출연기관) 또는 민간부문(법인,단체)의 근무 경력 등 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

※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.

※ 유의사항

1)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

2)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,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○ 근무시간 : 주 35시간 (1일 7시간)

○ 근무장소 :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, 4층 서대문구 지역경제과

○ 연 봉 액 : 50,495천원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서 정한 임용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

○ 수 당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 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11. 6.(금) ~ 11. 10.(화), <09:00~18:00, 중식시간제외>
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(대리접수 가능, 팩스 · 인터넷 접수 불가)

※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(우편환) 동봉 제출(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)

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- 접수처 :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정책팀(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, 4층)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(수입증지 판매처: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, 수입증지 가격 : 7,000원)
 - ※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서류전형	2026. 11. 12.(목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11. 13.(금)	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면접시험	2026. 11. 18.(수)	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6. 11. 20.(금)	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
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 재공고하며, 재공고를 통한 추가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2차 시험(면접시험) :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- 임용후보자 등록 후 결격사유 확인 등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임용자격 부여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첨부1) 1부

- 응시수수료 : 7,000원 (수입증지 판매처 :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)

※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접수처에 제출

※ 응시원서 접수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
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

○ 이력서(첨부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등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첨부3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)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첨부5) 1부

○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(첨부6) 1부

○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사본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7호 서식)' 추가 제출

○ 자격증 사본 1통(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 첨부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
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정책팀 박제희 ☎ 02-330-1139